

국가과학기술연구회

제225회 임시이사회 회의록

1. 일 시: 2025년 3월 13일(목) 13:30 ~ 16:36

2. 장 소: 한국과학기술회관 2관 1101호(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)

3. 참석이사

- 이사장 김영식
 - 이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이창윤 (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 대참)
 - " 김재현
 - " 민병주
 - " 박 찬
 - " 손수정
 - " 신형철
 - " 심현주
 - " 이도현
 - " 이우일
 - " 이주원
 - " 이학성
 - " 최영진
- (재적이사 17인 중 13인 참석)
- * 간 사 김태우

4. 상정안건

<보고 안건>

- 제1호. 제222회, 제224회 임시이사회 개최(서면) 결과 보고
- 제2호.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역조직(제주권연구본부) 시범사업 운영계획(안) 보고

<의결 안건>

- 제1호.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선임(안)
- 제2호. 안전성평가연구소 기관운영계획(안)
- 제3호. 소관연구기관 특별채용 관리규정 제정(안)
- 제4호.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인력교류 규정 전부개정(안)
- 제5호.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임용 추진계획(안)

5. 결과

<보고 안건>

- 제1호. 제222회, 제224회 임시이사회 개최(서면) 결과 보고

◇ 제222회, 제224회 임시이사회 개최(서면) 결과를 보고

◇ 주요내용

제222회 임시이사회 결과

- 일자: '25. 2. 5.(수) ~ 2. 6.(목)
- 참여: 재적이사 11인 중 8인 참여
- 상정 안건 및 결과

| 구분 | 안건명 | 결과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의결1 |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선임 추진계획(안) | 원안 의결 |

제224회 임시이사회 결과

- 일자: '25. 2. 25.(화) ~ 2. 26.(수)
- 참여: 재적이사 11인 중 7인 참여
- 상정 안건 및 결과

| 구분 | 안건명 | 결과 |
|-----|---|-----------------|
| 의결1 | 한국철도기술연구원,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선임(안) | 각 외부위원 2인 선임 |

- 발언요지: 별도 의견 없음

- 상정결과: 원안 접수

□ 제2호.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역조직(제주권연구본부) 시범사업 운영계획(안) 보고

◇ 한국전자통신연구원(이하 'ETRI') 지역조직(제주권연구본부) 시범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지역조직 설립前 설치 · 운영의 타당성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이사회 보고 후 추진

* 연구회 「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·운영규정」에 따라 검토위원회의 검토 실시('25.2.), 이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

◇ 주요내용

- (목적) ETRI의 제주권연구본부 설립 추진으로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(기후)과 제주특화(관광) 분야 중심의 AI·디지털 전환 제주지역 허브 구축
- (위치)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(첨단로 241)
- (사업기간) '25. 4. ~ '27. 12.(33개월)
- (규모) 총사업비: 9,000백만원 / 인력: 총 15명

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 합계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제주도비 | 1,500 | 1,500 | 1,500 | 4,500 |
| 국비* | 1,500 | 1,500 | 1,500 | 4,500 |
| 소계 | 3,000 | 3,000 | 3,000 | 9,000 |

* 연간 사업비(30억) : 인건비(13.16억), 운영비(5.42억), 연구사업비(11.42억)

- (사업내용) ①AX기후테크, ②소버린 AX 관광, ③지역상생협력 등
 - ① 제주 AI기반 탄소중립 개방형 플랫폼 개발 및 구축
 - ② 제주 소버린 AX 관광 개방형 플랫폼 개발 및 구축
 - ③ AI 및 반도체 분야 제주지역 인력 양성
- (향후계획) 원안 추진 시, '25.4.부 시범사업 실시

- 발언요지: 본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잘 추진하여 주길 바라며, 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관계기관 등과 검토·협의 바람
- 상정결과: 원안 접수

<의결 안건>

- 제1호.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선임(안)

◇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로부터 추천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후보자 3인 중 1인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으로 선임

◇ 주요내용

- 선임방법

- 후보자 3인 대상 면접심사 실시
 -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이사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선임
- * 임기: '25.3.14. ~ '28.3.13.(3년)

- 상정결과: 권석윤 후보자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으로 선임함

□ 제2호. 안전성평가연구소 기관운영계획(안)

- ◇ 안전성평가연구소 소장(허정두, 임기: '24.9.2~'27.9.1.)이 제출한 임기 중 경영목표가 포함된 기관운영계획(안)을 의결
- * 연구회 점검단의 서면·현장점검, 과기정통부 상위점검을 거쳐 수정·보완

◇ 주요내용

| 구분 | 주요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비전 | ○ 국민건강과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글로벌 독성연구기관 |
| 경영목표 | ○ 창의적 사고(Creativity)와 협력(Cooperation) 기반의 지속가능한(Conservation) 독성연구기관 실현 |
| 공통 영역 | <p>외부평가항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연구보안평가(5점)② 연구지원체계평가(6점)③ 여성과학기술인 채용·재직·승진 목표제(5점)④ 가족친화인증(4점)⑤ 연구실정밀 안전진단(5점) |
| 자율 영역 | <p>성과목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글로벌 선도를 위한 R&D 전략성 강화 및 우수 인재 확보(14점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KIT 2045 미래 전략 체계 구축- 핵심기술 육성을 위한 기본사업 운영체계 개편- 핵심기술 기반 인재 확보 체계 마련 및 인력재배치 추진② R&D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(14점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최적의 연구환경을 위한 연구행정 혁신- 연구혁신을 위한 인재양성 및 조직문화 개선- 행정부담 경감 및 R&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연구 기반 구축③ 대형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 활성화 및 성과확산 체계 고도화(12점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대내외 융합·협력 기반 조성- 산학연 개방형 협력 연구 확대- 기술-산업 연계 강화를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④ 지역조직 역량 강화 및 지역 혁신 허브 체계 구축(10점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지역 조직의 R&R 수행 역량 강화- 전북권 첨단바이오 중심의 산업계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- 경남권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 현안 해결형 R&D 강화 |
| 현안대응영역·기관장 기여·연구성과 영역 | ※ '현안대응영역·기관장 기여 연구성과 영역'은 별도의 목표를 수립하지 않고, 향후 평가 시 정책·기술 환경 변화 등에 대한 기관의 대응노력·성과, 기관장이 연구성과 창출·증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연구 성과 등을 평가 |

- 발언요지: 별도 의견 없음
- 상정결과: 원안 의결

□ 제3호. 소관연구기관 특별채용 관리규정 제정(안)

◇ 소관 출연(연)에 핵심분야의 우수인재 적시 영입·유치를 위하여 「소관연구기관 특별채용 관리규정(안)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

◇ 주요내용

- (규정체계) 과기출연기관법(법률) > 시행령(대통령령) > 운영규정 (과기정통부 훈령) > 특별채용 관리규정(NST 소관연구기관 관계규정)
 - * 규정구성: 총 11개 조문
- (기본방향) 공개·제한 경쟁채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비공모 특별채용 실시
 - * 근거: 운영규정(과기정통부 훈령) 제9조(특별채용정원) 및 제14조(국가특임연구원 운영)
- (채용대상) 국·내외 명성이 높은 석학이나 연구실적이 탁월한 자, 새로운 연구분야 또는 연구기관 발전에 필요한 특수분야 연구를 담당할 자
 - * 규모: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특별채용정원 / 기간: 3년 이내, 연장 가능
- (보상·처우) 인건비는 자체수입을 활용하여 ‘국가특임연구원’에 부합한 예우와 보상을 위한 처우를 지원하되, 기관 예산 사정과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

- 발언요지: 별도 의견 없음
- 상정결과: 원안 의결

□ 제4호.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인력교류 규정 전부개정(안)

◇ 소관 출연(연) 간 다소 상이한 인력분야 제도 정비를 통해 인력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인력교류 규정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

◇ 주요내용

○ 기본방향

- 기관별 상이하게 사용 중인 인력교류의 공통 개념, 운영 기준 등을 명확화하여 우수인력의 교류 촉진 기반 마련

○ 주요 개정내용

- 인력교류 관리(제3장)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 구조 체계화
- 인력교류의 범위를 산학연으로 확대하고 교류유형 개념 정립
- 인력교류협의회, 기관, 교류인력의 역할 명확화 및 관리 기준 제시
- 교류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근거를 마련하여 인력교류 참여 유인 강화

- 발언요지: 개정(안) 일부 조문이 명확하게 해석, 적용될 수 있도록 자구 수정 등 보완 필요

- 상정결과: 수정 의결*

* [붙임] 개정(안) 및 수정(안) 대비표 참고

붙임

개정(안) 및 수정(안) 대비표

| 개정안 | 수정안 |
|--|--|
| 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(이하 “연구회”라 한다) 정관 제19조 및 제51조에 따라 <u>연구회</u>와 연구회 소관연구기관(이하 “연구기관”이라 한다) 직원의 파견 등 인력교류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“인력교류”라 함은 연구회 또는 연구기관, 타 산학연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<u>연구회</u>, <u>연구기관</u> 및 타 산학연 기관 사이에서 발생되는 인력의 이동을 말한다.2. ~ 4. (생략)5. “파견”이라 함은 <u>연구회</u>, <u>연구기관</u> 또는 타 산학연 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원 소속기관에서의 신분을 유지하되, 교류 기관에서 전일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.6. “겸임”이라 함은 기관의 <u>필요</u>에 따라, <u>직원</u>으로 하여금, 교류기관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, 직위나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원 소속기관에서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활동을 말한다.7. “겸직”이라 함은 개인의 <u>업무수행 목적</u>에 따라, 교류 기관에서 <u>업무</u>를 추가로 수행하는 것으로,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, 원 소속기관에서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활동을 말한다.8. “연구연가”라 함은 <u>연구회</u> 또는 연구기관의 직원이 자유로운 연구활동 등의 목적으로 교류기관에서 활동 하는 것을 말한다.9. (생략) | 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 제19조에 따라 협동·융합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 및 <u>국가과학기술연구회</u>와 소관연구기관, 타 산학연 기관 간의 상호 협력과 직원의 역량 증진 등을 위한 인력교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“인력교류”라 함은 연구회 또는 연구기관, 타 산학연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<u>기관 상호 간에 발생하는</u> 인력의 이동을 말한다.2. ~ 4. (개정안과 동일)5. “파견”이라 함은 <u>원 소속기관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</u> 교류기관에서 전일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.6. “겸임”이라 함은 기관의 <u>직권</u>에 따라, <u>교류기관에서 별도</u>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, <u>원 소속기관에서의 직위나 직무내용과 유사하고 본래의</u>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활동을 말한다.7. “겸직”이라 함은 개인의 <u>필요</u>에 따라, 교류기관에서 <u>비영리 목적의 별도</u>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, <u>본래의</u>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활동을 말한다.8. “연구연가”라 함은 <u>개인의 연구활동 발전을 위하여</u> 교류기관에서 <u>일정기간 동안 자유로운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는</u> 것을 말한다.9. (개정안과 동일) |
| <p>제4조(운영절차) ① (생략)</p> <p>② 원 소속기관 및 교류기관의 장은 인력교류의 시행에 관한 의사결정, 시행경과 및 결과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연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4조(운영절차) ① (개정안과 동일)</p> <p>② 원 소속기관 및 교류기관의 장은 인력교류의 시행과 관련된 결정사항, 경과 및 결과 등에 관한 연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</p> |
| <p>제5조(연구회 인력교류사업) ① 연구회는 인력교류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5조(연구회 인력교류사업) ① 연구회는 인력교류활성화를 <u>목적으로</u> 예산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② (개정안과 동일)</p> |
| <p>제6조(인력교류협의회) ①~② (생략)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3. <u>타 위원회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③ 연구기관은 인력교류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연구회에 인력교류 수요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연구회는 “<u>인력교류협의회</u>”를 통하여 해당</p> | <p>제6조(인력교류협의회) ①~② (개정안과 동일)</p> <p>1.~2. (개정안과 동일)</p> <p>3. <u>내외부 위원회 등과의 인력교류 관련 협력이 필요한 사항</u></p> <p>4. (개정안과 동일)</p> <p>③ 연구기관은 인력교류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연구회에 인력교류 수요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연구회는 <u>인력교류협의회</u>를 통하여 해당</p> |

| 개정안 | 수정안 |
|--|---|
| 교류인력을 추천할 수 있다. ④ (생략) | 교류인력을 추천할 수 있다. ④ (개정안과 동일) |
| 제7조(기관의 역할) ①~③ (생략) ④ <u>인력교류로 인한 6개월 이상의 공석으로</u>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원 소속기관은 대체인력을 확보 할 수 있다. | 제7조(기관의 역할) ①~③ (개정안과 동일) ④ <u>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교류활동으로</u> 6개월 이상의 공석이 예상되는 경우 원 소속기관은 해당 교류인력을 현원에서 제외하고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. |
| ⑤~⑦ (생략) | ⑤~⑦ (개정안과 동일) |
| 제9조(업무수행) ① 교류인력은 교류기간 동안 원 소속기관과 교류기관 간 합의한 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되, 교류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. 1. <u>파견과 고용휴직</u> 의 경우, 교류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 한다. 2. 겸임 및 겸직의 경우, 해당 교류활동으로 인한 원 소속 기관에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, 이를 조건 으로 원 소속기관 및 교류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근무 비율을 정할 수 있다. 3. 그 밖의 인력교류의 경우, 원 소속기관과 교류기관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. | 제9조(업무수행) ① 교류인력은 <u>교류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</u>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. 다만, 원 소속기관과 교류기관 등의 협의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. 1. <u>파견, 연구연가 및 고용휴직</u> 의 경우, 교류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한다. 2. 겸임 및 겸직의 경우, 해당 교류활동으로 인한 원 소속 기관에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 소속기관 및 교류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근무 비율을 정할 수 있다. 3. < 삭제 > |
| ② ~ ③ (생략) | ② ~ ③ (개정안과 동일) |
| 제10조(인건비 지원) ① ~ ② (생략) ③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을 고려하여 교류 인력이 참여하는 <u>연구사업</u> 에서 지급한다. ④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<u>지원인력</u> 의 인건비는 원 소속기관에서 <u>지급</u> 한다. ⑤ 다만,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원 소속기관과 교류기관, 교류인력 간 협의를 통하여 인건비의 지급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| 제10조(인건비 지원) ① ~ ② (개정안과 동일) ③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<u>인력의</u>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을 고려하여 교류인력이 참여하는 <u>연구사업 예산</u> 에서 지급한다. ④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<u>인력</u> 의 인건비는 원 소속 기관에서 <u>부담</u> 한다. ⑤ 다만,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원 소속기관과 교류기관, 교류인력 간 협의를 통하여 인건비의 지급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|
| 제11조(교류인력의 근태 및 성과관리) ① ~ ④ (생략) < 신설 > | 제11조(근태 및 성과관리) ① ~ ④ (개정안과 동일) ⑤ 그 밖의 제3조제6호의 겸임, 제3조제7호의 겸직 등의 교류인력에 대하여 원 소속기관이 근태 및 성과관리 등의 의견을 요청할 경우 교류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. |
| 제12조(인력교류의 해지) 교류기관은 교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인력교류를 해지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5. 교류인력이 육아휴직 등 <u>부득이한</u> 사유로 교류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. (생략) | 제12조(인력교류의 해지) 교류기관은 교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인력교류를 해지할 수 있다. 1. ~ 4. (개정안과 동일) 5. 교류인력이 육아휴직 등 <u>개인적</u> 사유로 교류업무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6. (개정안과 동일) |
| 제13조(지원원칙)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소속 직원의 인력교류 시, <u>교류인력의 대우와 관련하여 본 규정을 우선</u> | 제13조(지원원칙) ①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소속 지원의 인력교류 시, <u>관련 처우 등에 대해서는 이</u> 규정을 우선 |

| 개정안 | 수정안 |
|--|---|
| <p>적용한다.</p> <p>②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이 규정의 기준에 따라 교류 인력이 소속과 무관하게 <u>동일 수준의</u>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교류인력의 대우 개선을 위해 항시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른 지원 기준이 이 규정의 기준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</p> | <p>적용한다.</p> <p>②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이 규정의 기준에 따라 교류 인력이 소속과 무관하게 <u>차별없이 공정한</u>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교류인력의 대우 개선을 위해 항시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른 지원 기준이 이 규정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</p> |
| <p>제14조(인력교류 수당) ① 인력교류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별도의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우선 적용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인력교류 수당의 세부 지급기준은 이 규정의 별표를 따른다. 다만, 별도의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14조(인력교류 수당) ① 인력교류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<u>준용한다</u>. 다만, <u>교류인력이 참여하는 사업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</u>.</p> <p>1. ~ 2. (개정안과 동일)</p> <p>3. 인력교류 수당의 세부 지급기준은 이 규정의 별표를 <u>준용한다</u>. 다만, 별도의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② (개정안과 동일)</p> |
| <p>제15조(주거지원 등) ① 인력교류 시 근무지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주거비용 또는 교통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주거비용 및 교통비용의 세부 지급기준은 이 규정의 별표를 따른다. 다만, 별도의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15조(주거지원 등) ① 인력교류 시 근무지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주거비용 또는 교통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<u>준용한다</u>. 다만, <u>교류인력이 참여하는 사업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</u>.</p> <p>1. ~ 2. (개정안과 동일)</p> <p>3. 주거비용 및 교통비용의 세부 지급기준은 이 규정의 별표를 <u>준용한다</u>. 다만, 별도의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② (개정안과 동일)</p> |
| <p>제16조(복귀 후 혜택) ① (생략)</p> <p>② 원 소속기관과 파견자의 원 소속기관 복귀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| <p>제16조(복귀 후 혜택) ① (개정안과 동일)</p> <p>② 원 소속기관과 파견자의 원 소속기관 복귀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개정안과 동일)</p> <p>③ (개정안과 동일)</p> |

□ 제5호.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임용 추진계획(안)

◇ 「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임용 추진계획(안)」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 절차를 추진

◇ 주요내용

- **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후임자 임용 추진**
 - ※ 임기만료자: 감사위원장 장병원('22.2.14.~'25.2.13.), 감사위원 이덕희('22.2.14.~'25.2.13.)
 - ※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후임위원 임명시까지 위원자격 존속 중
- **임용직위 및 인원:** 감사위원장 1명, 감사위원 1명(개방형직위)
 - ※ 임기: 3년(연임 불가) / 인사규정에 따라 감사위원(장)은 직원 정년(만 61세) 미적용
 - ※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 7인(위원장 포함)까지 구성 가능, 現 3인 운영 중
- **임용방식:** 공개모집(내·외부 대상)
- **지원자격: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| 구분 | 자격요건 |
|----|--|
| ① |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|
| ② |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|
| ③ | 공공기관,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|
| ④ |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|
| ⑤ | 과학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감사 관련 업무, 연구·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|

※ 공공기관은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

○ **추진절차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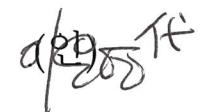
- **발언요지:** 별도 의견 없음
- **상정결과:** 원안 의결

(이상 의장은 16:36에 폐회를 선언함)

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관 제25조에 따라
의장 및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 함

2025. 3. 13.

이사장 김 영 식 

이 사 이 창 윤 

이 사 이주원 